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5568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4. 4. 30. 접수 제63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희승

별지